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94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박주민·김문수·정일영
김 윤·장종태·노종면
권향엽·김용만·이훈기
황명선·송재봉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물미용학원의 경우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업종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해당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여도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3호의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에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 ----- ----- -----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